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17회 제1차임사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6. 2.

이 진 환 의원

제 안 설 명 서

제안자: 이 진 환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관내 공영주차장의 경우 차량을 이용한 영리 목적의 홍보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주차장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안 제13조 주차거부금지 제외 사항으로 제3호 ‘영업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판매 및 홍보 등 영리 목적의 행위로 수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6년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 예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개정 조례안은 관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00926001
----------	----------

발의연월일: 2026. 1. 22.

발 의 자: 이진환 손범구 남현주
박왕규 김정희

1. 제안이유

- 관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주차장 내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차거부 대상인 ‘영업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수정(안 제13조제3호)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8조의2, 제15조

나.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영업행위”를 “판매 및 홍보 등 영리 목적의 행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p> <p>1. · 2. (생략)</p> <p>3.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u>영업행위</u>를 하는 경우</p>	<p>제13조(주차거부금지) -----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u>판매 및 홍보 등 영리 목적의 행위</u>-----</p>

【 관계 법령 】

□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6. 8., 2024. 1. 9.>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15조(관리방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9, 2024.1.9>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